

의안번호	2212240
의 퇴 인	추경호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0.
추계번호	25F418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·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년에서 2035년까지 9년간 총 3,989.2억원(연평균 459.8 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등 세액공제 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면 2027년부터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6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~ 2035	누적	연평균
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0조)	-2	-2	-2		-6	-2
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1조)	-4.4	-4.4	-4.4		-13.2	-4.4
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)	-156	-312	-468	-1,872	-2,808	-312
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의2)	-45	-90	-135	-541	-811	-90.1
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4조)	-20.8	-41.6	-62.4	-187.2	-312	-44.6
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85조의8)	-2	-2	-2		-6	-2
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121조의22)	-2.8	-5.5	-8.3	-16.5	-33.0	-4.7
계	-233.0	-457.5	-682.1	-2,616.7	-3,989.2	-459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0조 (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대도시권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의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2	안 제61조 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3	안 제63조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4	안 제63조의2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5	안 제64조 (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)	○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6	안 제85조의8 (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지·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7	안 제121조의22 (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0조 (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2	안 제61조 (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3	안 제63조 (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	
4	안 제63조의2 (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)	○	
5	안 제64조 (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○	
6	안 제85조의8 (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7	안 제121조의2제1항 (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(안 제60조)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
 - 향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24년 실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 - 최근 2년간 과세특례의 실적은 2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(안 제61조)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
 - 향후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과세특례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19년 3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- (안 제63조 및 제63조의2)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
 -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의 경우 이전지역별 감면기간을 감안하여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4년(2021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수도권 밖 본사 이전의 경우 2024년 감면액의 잠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(7년 100% 감면, 3년 50% 감면)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 -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¹⁾은 고려하지 않음
- (안 제64조)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
 -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감안하여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5년 전망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 -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은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한 후 배분

1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-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첫 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입주 후 5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(안 제85조의8)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
 - 향후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에 따른 과세이연 효과(이자상당액)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실적
- (안 제121조의22)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2025년 감면 전망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게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 - 동 감면은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%, 2년간 50%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연평균 실적에 '1/4'를 곱하여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연 단위 발생액(100% 감면기준)을 계산하고, 향후 세수효과를 계산
 - 신규 입주기업의 연 단위 감면액(100% 감면) = 11억원 × 1/4 = 2.75억원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0조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대도시권 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
 - 특례대상: 대도시권 내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
 - 단,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

- 특례내용: 공장의 대지·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1년 이전까지는 0.1~0.2조원 수준이었으나,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4년 2억원 수준
 - －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(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)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

[표 2]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조세지출 실적	0.2	0.1	1.0	2.0	2.0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향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
 - 최근 2년간 과세특례의 실적은 2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

(3) 추계결과

-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2억원, 2029년 2억원 등 3년간 6억원(연평균 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0조)	-2	-2	-2	-6	-2

나.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1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 본사 등의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

○ 특례대상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사 및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

－ 단, 본사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전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

○ 특례내용: 본사 및 주사무소의 대지·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, 5년 분할 익금산입 허용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

○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.4억원 수준으로 발생

－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억원에서 2023년 7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 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－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(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)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

[표 4]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	연평균
조세지출 실적	3	2	5	7	5	4.4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법인세

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.4억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,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(3) 추계결과

-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4.4억원, 2029년 4.4억원 등 3년간 13.2억원(연평균 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(안 제61조)	-4.4	-4.4	-4.4	-13.2	-4.4

다.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·소득세 감면
 - 감면요건: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(중소기업은 2년) 계속하여 공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절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
 - －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었으나, 2021년부터 일반 기업까지 확대
 - －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됨
 - 감면내용: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·소득세 감면

- 수도권 내(중소기업한정),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
-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 : 7년 100% + 3년 50%
-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
- 단, 2022년까지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% 감면, 이후 3년간 50% 감면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)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
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2021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
- 2021~2024년(잠정) 법인세 감면액 평균: 1,092억원
- 2021~2024년(잠정) 소득세 감면액 평균: 240억원

[표 6]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(잠정)
소계	2,052	1,192	1,279	805
법인세	1,799	928	1,029	610
소득세	253	264	249	195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최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액의 평균을 바탕으로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각각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(법인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64억원* + 100% 감면액 128억원**

$$* 64\text{억원} = 1,092\text{억원} \div 17 (7\text{년} \times 2 + 3\text{년})$$

$$** 128\text{억원} = 64\text{억원} \times 2$$

-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10년(7년 100% 감면, 3년 50% 감면)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- (소득세)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14억원* + 100% 감면액 28억원**

* 14억원 = 240억원 ÷ 17 (7년 × 2 + 3년)

** 28억원 = 14억원 × 2

- 공장을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공장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²⁾은 고려하지 않음

[표 7] 연도별 법인·소득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	2035
2026년 이전법인	-156	-156	-156	-156	-156	-78	-78		
2027년 이전법인		-156	-156	-156	-156	-156	-78	-78	
2028년 이전법인			-156	-156	-156	-156	-156	-78	-78
계	-156	-312	-468	-468	-468	-390	-312	-156	-78

(3) 추계결과

-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·소득세는 2027년 156억원, 2037년 78억원 등 2027년에서 2035년까지 9년간 총 2,808억원(연평균 31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28년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	-156	-312	-468	-468	-468	-390
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3조)	2033	2034	2035	합계		연평균
	-312	-156	-78	-2,808		-312

2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라.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(안 제63조의2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

- 감면요건: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
 -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 공장·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, 2021년부터 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
- 감면내용: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
 - 수도권 연접지역, 지방광역시, 대도시: 5년 100% + 2년 50%
 -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(위기지역,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), 기타지역 : 7년 100% + 3년 50%
 - 기타지역 중 낙후지역: 10년 100% + 2년 50%
 - 단, 2022년까지는 본사 이전일 이후 해당 본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% 감면, 이후 3년간 50% 감면(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)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
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

□ (감면실적)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2021년 기준 3,032억원, 2024년(잠정치) 3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

- 2021년부터 ‘공장·본사 이전’에서 ‘본사 이전’으로 조정되었으므로 2021년 이후의 실적을 살펴봄
-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임

[표 9]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억원)

연도	2021	2022	2023	2024(잠정)
조세지출 실적	3,032	2,993	727	383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감면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³⁾이므로 2024년 잠정치⁴⁾를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1년 단위 환산액: 50% 감면액 23억원* + 100% 감면액 45억원**

* 23억원 = 383억원 ÷ 17 (7년 × 2 + 3년)

** 45억원 = 23억원 × 2

○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7년(5년 100% + 2년 50%)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－ 기존 조세지출 실적을 본사 이전 지역별로 구분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(7년 100% + 3년 50% 또는 10년 100% + 2년 50%)⁴⁾은 고려하지 않음

[표 10] 연도별 법인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	2035
2026년 이전법인	-45	-45	-45	-45	-45	-23	-23		
2027년 이전법인		-45	-45	-45	-45	-45	-23	-23	
2028년 이전법인			-45	-45	-45	-45	-45	-23	-23
계	-45	-90	-135	-135	-135	-113	-90	-45	-23

(3) 추계결과

□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45억원, 2035년 23억원 등 2027년에서 2035년까지 9년간 총 811억원(연평균 9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세액감면이 7년간 이루어짐에 따라 2028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대 2035년까지 발생할 수 있음

3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에 따르면 2025년 감면실적의 전망치 역시 401억원으로 2024년 잠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2024년 잠정치를 기준으로 추계

4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5년

(단위: 억원)

	'27	'28	'29	'30	'31	'32
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3조의2)	-45	-90	-135	-135	-135	-113
	'33	'34	'35	합계	연평균	
	-90	-45	-23	-811	-90.1	

마.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4조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운영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

○ (개정연혁)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.12.29. 개정된 규정으로, 농공단지⁵⁾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⁶⁾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, 감면기한 및 감면율, 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

- 2018.12.24. 일부개정: 5년간 법인세 등에 대한 50% 감면율,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감면 한도와 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신설
- 2021.12.28. 일부개정: 감면대상 사업장의 폐업 또는 법인 해산 등의 경우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

○ (현행규정)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% 감면

- 감면대상: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

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

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

5)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(특별자치시와 「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.

6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나주·나주혁신·김제지평선·북평·담양·동함평·세풍일반산업단지, 장흥·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, 북평국가산업단지, 강진산업단지,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,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,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총 13개 지역을 말한다.

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

- 감면한도: ①+② 또는 ①+③

① 투자누계액의 50% ② 상시근로자수×1,500만 원 ③ 청년상시근로자수 등×2,000만 원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농공단지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43억원에서 2024년 99.6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

[표 12]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및 전망: 2020~2024년

(단위: 억 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소계	43.0	49.5	54.1	49.9	99.6
법인세	30.4	38.9	49.2	45.9	98
소득세	12.6	10.6	4.9	4.0	1.6 ¹⁾

주: 1) 2024년 소득세 감면실적

자료: 국세통계포털, 「법인세 세액감면 신고현황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신고현황」, 각 신고연도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신고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5년 감면액 전망치를 바탕으로 신규 입주기업으로 인한 감면 발생액을 가정한 후,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○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2025년 감면액(104억 원)의 20% 수준인 20.8억 원으로 가정

- 2025년 감면실적 전망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입주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기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된 감면실적의 합계이므로 이 중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은 감면액의 1/5인 20.8억 원으로 가정

○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신규 입주기업의 감면 발생액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할 경우, 향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추계

- 신고기준에 따라 t년도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세액감면 세수효과는 t+1~t+5년에 걸쳐 발생

[표 13] 연도별 법인·소득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3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1	2033
2026년 입주기업	-20.8	-20.8	-20.8	-20.8	-20.8		
2027년 입주기업		-20.8	-20.8	-20.8	-20.8	-20.8	
2028년 입주기업			-20.8	-20.8	-20.8	-20.8	-20.8
계	-20.8	-41.6	-62.4	-62.4	-62.4	-41.6	-20.8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0.8억 원, 2033년 20.8억 원 등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 312억 원(연평균 44.6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3년간 적용되므로, 세수효과는 2027~2033년까지 발생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7~2033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4조)	-20.8	-41.6	-62.4	-62.4	-62.4
	2032	2033	누적	연평균	
	-41.6	-20.8	-312.0	-44.6	

바.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5조의8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공장 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이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
 - 특례대상: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동일 산업단지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기업

- 특례내용: 공장의 대지·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, 5년 분할
익금산입 허용
 -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, 양도소득세 5년 거치, 5년 분할납부 허용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
특례 실적치는 다음과 같음

- 동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1년 이전까지는 0.1~0.2조원 수준이었으나,
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4년 2억원 수준
 -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(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) 효과를
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
 - 감면실적은 전액 법인세에서 발생

[표 15]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조세지출 실적	0.2	0.1	1.0	1.0	2.0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
효과는 2024년 실적(2억원)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동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2022년 이후 1억원, 2024년 2억원으로 증가
하였으며, 변동이 크지 않아 실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-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
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2억원, 2029년 2
억원 등 3년간 6억원(연평균 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85조의8)	-2	-2	-2	-6	-2

사.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(안 제121조의22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보건의료기술 사업 또는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
 - 해당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100% 감면, 이후 2년간 50% 감면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) 2028. 12. 31.
-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은 2020년 9억원, 2024년(잠정치) 11억원 수준
 -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입주기업 실적 등에 따라 감면액 변동이 큼

[표 17]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감면실적	9	11	24	7	11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향후 2025년 감면 추정치(11억원)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, 동 감면이 입주 후 5년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연간 감면액으로 환산하여 시점별 배분
 -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(100% 감면) = 11억원 $\times$ 1/4* = 2.75억원
* 3년간 100%, 2년간 50%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, 4로 나누어 환산

[표 18] 연도별 법인·소득세 감면 예상액: 2027~2033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
2026년 입주	2.75	2.75	2.75	1.38	1.38		
2027년 입주		2.75	2.75	2.75	1.38	1.38	
2028년 입주			2.75	2.75	2.75	1.38	1.38
계	2.8	5.5	8.3	6.9	5.5	2.8	1.4

(3) 추계결과

-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~2033년까지 총 7년간 총 33억원(연평균 4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7~2033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21조의22)	-2.8	-5.5	-8.3	-6.9	-5.5
	2032	2033	누적	연평균	
	-2.8	-1.4	-33.0	-4.7	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